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원자력안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과태료 체계를 정비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이 개정(법률 제21679호, 2026.5.19. 공포, 2027.1.1. 시행)됨에 따라 시행령상 위반행위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하고, 원자로조종면허 보수교육 부담금의 징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 상한액이 세분화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 수정(시행령안 제178조, 별표 12 제1호라목 및 제2호)

-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시행령상 위반행위 인용 조문 등 수정

나. 원자로조종면허 보수교육 부담금 부과 근거를 신설(시행령안 별표 10의3 제5호)

- ‘10메가와트 미만의 연구용·교육용 원자로(경희대 교육용원자로)’의 원자로조종면허자 보수교육을 위한 부담금 신설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8조 중 “법 제119조제2항”을 “법 제119조제6항”으로 한다.

별표 10의3 제5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기본구분	세부구분	기준단가(원)
가. 원자로조종사면허(발전용원자로 또는 열출력 10메가와트 이상의 연구용원자로)	1) 공통과정	193,000
	2) 전문과정	107,000
	3) 실습과정	128,000
가-1. 원자로조종사면허(열출력 10메가와트 미만의 연구용원자로 또는 교육용원자로)	1) 공통과정	91,000
나.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(발전용원자로 또는 열출력 10메가와트 이상의 연구용원자로)	1) 공통과정	193,000
	2) 전문과정	107,000
	3) 실습과정	128,000
나-1.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(열출력 10메가와트 미만의 연구용원자로 또는 교육용원자로)	1) 공통과정	91,000

별표 12 제1호라목 중 “법 제119조제1항”을 “법 제1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”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단위: 만원)

위반 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1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2항제1호	500	1,000	2,000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나. 법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1호	300	450	900
다.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1항제1호	600	1,200	3,000
라. 법 제15조의2에 따른 성능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·조작한 경우	법 제119조 제1항제2호	600	1,200	3,000
마.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119조 제3항제1호	400	800	1,600
바.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2항제1호	500	1,000	2,000
사. 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2항제1호	500	1,000	2,000
아.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119조 제3항제1호	400	800	1,600
자. 법 제2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119조 제2항제2호	500	1,000	2,000
차. 법 제2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2항제1호	500	1,000	2,000
카. 법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1호	300	450	900
타. 법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1항제1호	600	1,200	3,000
파. 법 제2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2항제1호	500	1,000	2,000
하. 법 제3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2항제1호	500	1,000	2,000
거.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1항제1호	600	1,200	3,000
너.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2항제1호	500	1,000	2,000
더.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2항제1호	500	1,000	2,000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러.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 제1호	300	450	900
머.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1항 제1호	600	1,200	3,000
버.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119조 제3항 제1호	400	800	1,600
서.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2항 제1호	500	1,000	2,000
어.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5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119조 제3항 제1호	400	800	1,600
저.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119조 제2항 제2호	500	1,000	2,000
처.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2항 제1호	500	1,000	2,000
커. 법 제35조제3항 단서 또는 제39조의4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2항 제1호	500	1,000	2,000
터. 법 제39조 또는 제39조의8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119조 제3항 제1호	400	800	1,600
퍼.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9조 제3항 제2호	400	800	1,600
허. 법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119조 제3항 제3호	400	800	1,600
고. 법 제4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3항 제4호	400	800	1,600
노. 법 제39조의2 또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 제1호	200	300	600
도. 법 제39조의3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 제1호	300	450	900
로. 법 제39조의3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	법 제119조	500	1,000	2,000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제2항제1호			
모. 법 제4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1호	200	300	600
보. 법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1호	300	450	900
소. 법 제4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1호	200	300	600
오. 법 제4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요구로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2호	200	300	600
조. 법 제4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조치 또는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3호	200	300	600
초. 법 제4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4호	200	300	600
코.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5호	200	300	600
토. 법 제50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6호	200	300	600
포.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1호	300	450	900
호.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1호	200	300	600
구.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1호	200	300	600
누.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1호	300	450	900
두.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6호	200	300	600
루. 법 제5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	법 제119조	200	300	600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제5항제5호			
무. 법 제5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1호	300	450	900
부. 법 제5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1호	300	450	900
수. 법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1호	200	300	600
우. 법 제5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요구로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2호	200	300	600
주. 법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 또는 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3호	200	300	600
추. 법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4호	200	300	600
쿠.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1호	200	300	600
투. 법 제58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5호	200	300	600
푸. 법 제5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, 안전관리규정 또는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2호	300	450	900
후. 법 제5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나 협력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19조 제3항제5호	400	800	1,600
그. 법 제6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3호	300	450	900
느. 법 제6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1호	200	300	600
드. 법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4호	300	450	900
르. 법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5호	300	450	900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므.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1호	300	450	900
브.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1호	200	300	600
스. 법 제6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1호	300	450	900
으.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6호	300	450	900
즈.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2호	300	450	900
츠.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1호	300	450	900
크. 법 제68조의4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1호	300	450	900
트.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1호	300	450	900
프.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1호	300	450	900
흐.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1호	200	300	600
기.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방법 및 절차나 인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7호	300	450	900
니. 법 제7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1호	300	450	900
디. 법 제72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2호	300	450	900
리. 법 제73조를 위반하여 방사선피폭의 점검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7호	200	300	600
미.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대응계	법 제119조	300	450	900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은 경우	제4항제8호			
비. 법 제7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3호	300	450	900
시. 법 제7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1호	200	300	600
이. 법 제7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3호	300	450	900
지. 법 제77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1호	200	300	600
치. 법 제7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1호	300	450	900
키.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9호	300	450	900
티. 법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5호	200	300	600
피. 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1호	200	300	600
히. 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1호	200	300	600
개. 법 제91조를 위반하여 방사선장해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9조 제3항제6호	400	800	1,600
내. 법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19조 제4항제1호	300	450	900
대. 법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8호	200	300	600
래. 법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9호	200	300	600
매. 법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119조 제5항제10호	200	300	600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우				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
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8조(과태료 부과기준 등) <u>법</u> 제1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.	제178조(과태료 부과기준 등) <u>법</u> 제119조제6항----- 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2) 397 - 7304